제324회 임시회 2013.10.17(목)

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/ 1



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10. 17 (목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윤성옥 의원 외 7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9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8일

(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성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농민단체 명칭 변경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농업인단체 명칭 변경(충청북도 생활개선회→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,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→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)에 따른 조항 개 정(안 제2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-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5조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: 나기성)

- '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'은 농업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 및 기금운용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, 조례 개정은 타당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,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, 충 청북도 4-H연합회,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,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단서 중 "충북4H본부"를 각각 "충북4-H본부"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, 지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농산지원과장

제6조제3호 중 "3년마다 1회이상"을 "매년"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했

정 아 개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인 단 동법시행령 제3조, 제7조 및 따른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 적으로 한다. 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」 제142조와 「지방자치단체」 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, 제4조 회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농 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「농촌진흥법」제2조의 규정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

제2조(기금의용도) 기금은 「농촌진 제2조(기금의 용도) 충청북도농촌 한국농업 경영인 충청북도연합 회,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

흥법, 제2조제2항제1호, 제2호의 전문인력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생활개선 라 한다)은 생활개선 충청북도연 회, 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회, 합회, 한국농촌지도자 충청북도연합 충청북도 4-H연합회, 사단법인 회, 충청북도 4-H연합회, 사단법 인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 합회,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청북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충청북도연합회의 육성을 지원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

현 행 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	제3조(기금의 구분 및 존속기한) ①
으로 구분하고, 제2조에서 정한	
단체 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	
운영한다. 다만, 충청북도 4-H	
연합회의 기금운용은 효율성 제고를	
위하여 <u>충북4H본부</u> 에서 한다.	충북4-H본부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생 략)	제4조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	3
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	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	
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
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	1.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기
농업기술원장, 기술지원부장, 지	술지원부장, 지원기획과장, 충청
원기획과장, 충청북도 농정국의	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, 농산
농업정책과장, 농산지원과장	<u>지원과장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전 행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2. (생 략) 3.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. (생 략) (신 설)	제6조(위원회의 기능)
	<u>될 수 있다.</u>

개 정 안 혂 햀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 한다. 무를 총괄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8조 ~ 제12조(생 략) 제8조 ~ 제12조(현행과 같음) 제13조(회계관리) ① ~ ② (생략) 제13조(회계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운용기금 관리는 각 단체별 ③ -----회장 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, 관련 대장과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충청북도 4-H 연합회는 충북4H -----충북4-H 본부에서 한다.

관계 법 령

□ 농촌진흥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,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-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안전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 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 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